

준비서면

사 건 2023구합51361

원 고 정치하는엄마들 외 3

피 고 충청북도교육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I. 본 서면의 범위

피고 2023. 8. 18.자 준비서면에 답변하겠습니다.

II. 이 사건 청구취지 범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즉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처분내용이 사실상 ‘학교명’에 국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원고는 소장 첨부 별지 기재 정보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III. 피고의 각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장 접수 이후 원고가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들을 임의 제출하였으므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임의 제출한 정보들은 아래와 같이 부족합니다. 소장 첨부 별지 목록 순서에 따라 을 제4호증의 1 피고 임의제출 자료의 부족함에 대해 설명합니다.

- ① 사건발생 학교명 : 피고가 정한 사건 수에 대한 학교명은 일응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학교 수가 왜 20개인지 객관적 근거제시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대상학교의 수는 본 사건에서 대단히 중요한 소송물이기 때문에 대상학교 수에 대한 피고의 임의적 주장만을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원고로서는 학교 수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없는 이상 학교명에 대한 불충분한 임의제출(일부 학교를 목록에서 아예 제외한 것으로 간주)이라는 주장으로 유지합니다.
- ② 가해자 재직기간 :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 소관사항” 라고만 되어 있고 미제공입니다. 공립학교의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만 있고 재직기간 미제공입니다.
- ③ 사건개요 : 형식상으로는 제공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하 ‘제공’으로만 표기)
- ④ 최초사건 인지일자 : 제공
- ⑤ 의명 · 실명 신고 여부 : 부존재라고 기재하였는데, 부존재 사유가 없습니다. 관련 법률과 교육부/피고 매뉴얼상 일응 부존재할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이하 ‘부존재’라고만 기재, 부당한 이유 동일)
- ⑥ 감사실시 여부/기관/기간 : 부존재
- ⑦ 수사기관 등에 신고주체/신고기관/신고혐의/수사 진행상황/수사결과 처분 기관/수사결과 처분통보일/수사결과 처분내용/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 : 부존재
- ⑧ 피해자 지원여부 및 지원기간 : 지원여부 제공, 지원기간 부존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임의제출 정보는 상당히 불충분하므로 피고의 각하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항을 바꾸어 피고가 제공하지 않거나 부존재라고만 기재한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IV. 미제공, 부존재 주장의 부당성

1. 미제공 정보에 대하여

미제공 정보는 ① 피고가 정한 학교 수(사건 수)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근거, ② 사립학교 가해교사의 재직기간, 공립학교 가해교사 중 퇴직자의 재직기간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부존재’라고만 기재하였습니다. 위 미제공 정보는 피고가 일응 보유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① 피고는 스쿨미투 사건 접수, 조사, 신고 기관인 점, ② 사립과 공립 구별 없이 교사의 재직기간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반증해야 합니다.

2.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요지

피고는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부존재’라고 세 글자만 써놓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합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 예외사유도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을 잠탈하는 부정·편법의 공무수행 방식이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하나’ 고 할 것이 아니라 위 자료 또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후술하겠습니다.

나. ‘부존재’ 답변(거부처분)의 부당성

위 부존재 정보들은 일용 피고가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관련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또는 직무해태(교육부 업무매뉴얼 위반)입니다.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2020)’에 따르면, 학생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갑 제7호증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2020)}. 아래는 위 매뉴얼 33쪽입니다.



위 매뉴얼상 신고의무는 아래 법률들에 근거합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 ·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제67조(과태료)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의무) 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 도, 시 · 군 ·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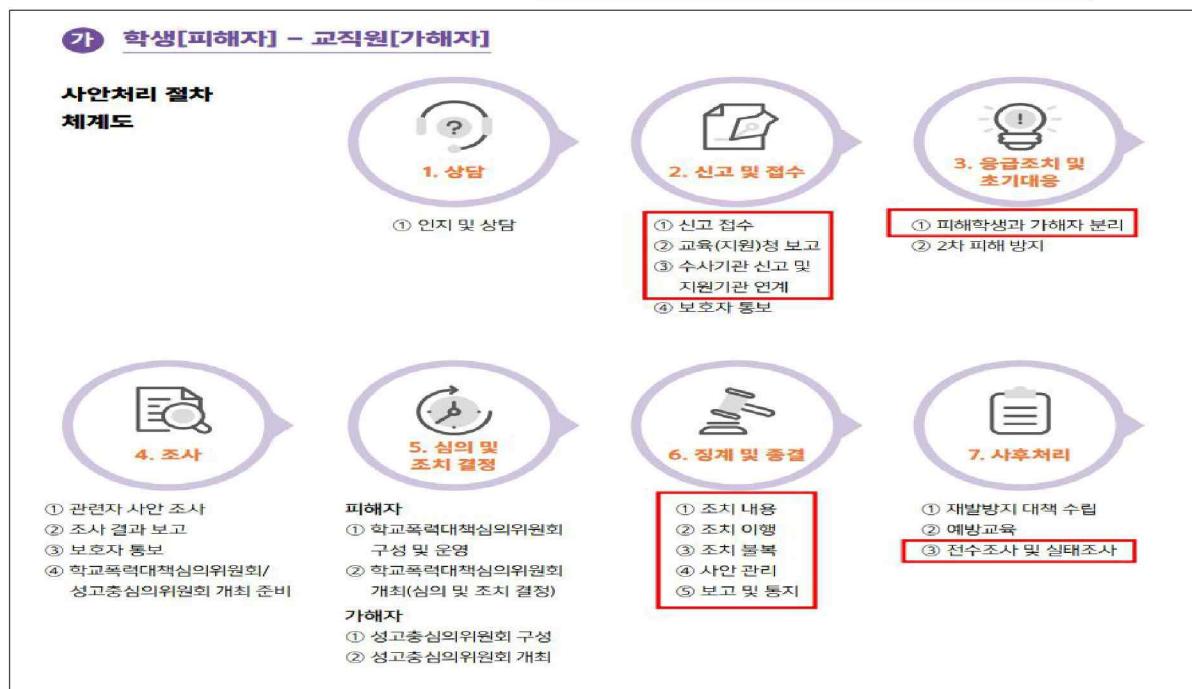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위와 같이 학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교사 등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4의2에서 규정하기를 <“아동학대범죄신고등” 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성폭력방지법 제9조 제1항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수사기관 신고 관련 정보 전부 ‘부존재’라고 답한바 이는 타당한 답변이 아닌 허위의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피고 임의제출 자료를 보면 형사처벌 대상의 성범죄 행위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존재’가 아니라 ‘신고의무 미이행’이라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귀 재판부께서 적극적 석명권을 행사하시어 신고의무를 미이행 한 것인지에 대해서 피고에게 석명 명령을 내리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위 매뉴얼 42쪽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가 학생,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입니다.



일선 교사 등 학교가 “신고 접수”하고 피고와 같은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위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조사를 거쳐서 징계 및 종결한 후에는 “조치내용”, “사안관리”, “보고 및 통지” 등이라 하여 사건처리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일웅 해야 할 국가기관의 업무). 그리고 “사후처리”로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합니다.

위 내용은 모두 피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정보들과 관련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아래와 같이 신고접수, 교육(지원)청 보고 사항은 “접수 대장”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0년)” 내 “각종 양식”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위 매뉴얼 43쪽). 피고가 ‘부존재’로 주장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명백히 ‘존재’ 한다는 근거입니다.



2. 신고 및 접수

1) 신고 접수

- 신고 주체: 피해자(학생, 보호자), 목격한 동료 학생, 목격한 교직원, 조력인
- 사안인지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성고충 상담창구¹⁰는 사안을 접수해야 합니다.
- 이때 담당자는 모든 접수 사안에 대해서 접수 대장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2) 교육(지원)청 보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접수된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0)내 각종 양식 활용하여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우선 유선 보고 후, 서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 보고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교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보고 시 지역에 따라 보고 부서 및 담당자가 다르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서식은 교육(지원)청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¹⁰ 성고충상담창구 인원 구성 및 역할은 본 매뉴얼 60p를 참고

그리고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법률상 신고의무, 심지어 피해자의 의사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신고의무 이행을 지시합니다(위 매뉴얼 44쪽).

3) 수사기관 신고 및 지원기관 연계

- (신고) 경찰청(☎ 112)/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 117), 학교전담경찰관
- (상담) 여성 긴급 상담전화(☎ 1366), 거주 지역 해바라기아동(통합)센터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관장(학교장)과 관련 종사자는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담당자는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성범죄 신고 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상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관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에 따라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미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률상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신고 시 유의사항

- 부모가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 신고 의무자인 학교(교장, 교사)의 역할과 부모의 법적 책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 신고하기 전 피해자에게도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급적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마음은 무엇인지, 신고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잘 들어주고 신고 후 과정 안내, 피해 지원, 신고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접수한 해당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학교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 그림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범죄 신고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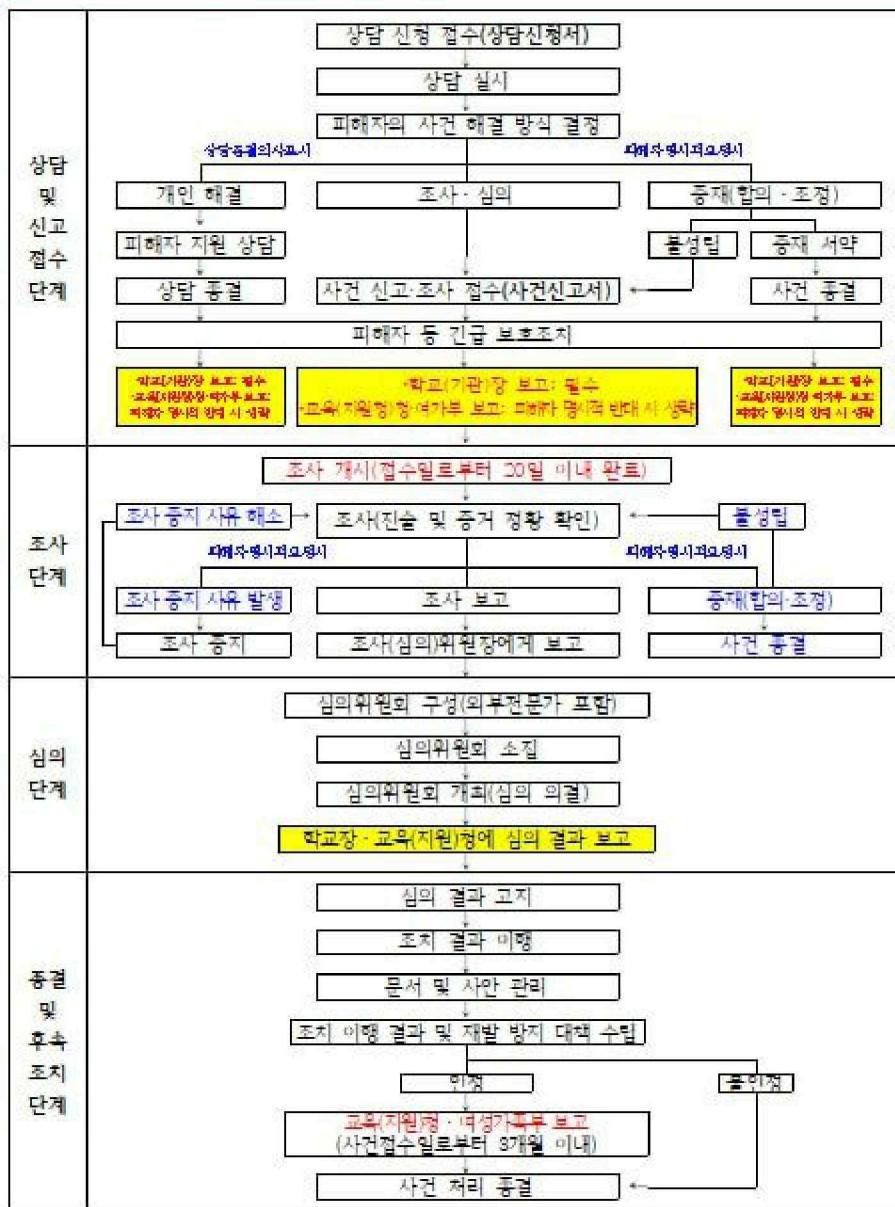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상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관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에 따라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률상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위 매뉴얼은 2023년도에 개정판이 나왔고 위 내용은 개정판 역시 동일합니다{갑 제8호증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2023) 中 페이지 30, 31, 68~70 참조}.

이는 피고가 작성한 “충청북도교육청용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갑 제9호증). 아래는 피고 매뉴얼 5쪽입니다.

I 사안 처리 개요

1. 사안 처리 흐름 안내도



위 피고 매뉴얼 6쪽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는 피고입니다.

2. 상급기관 보고 및 사안처리 부서

※보고 부서: 사안 발생 시 해당 주관부서와 총괄부서로 보고,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학생(피해자)-교사(가해자)의 경우 보고 필수

2. 상급기관 보고 및 사안처리 부서

가. 보고 시기

보고시기		상담 종결 후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사시 미통보)	심의위원회 심의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성희롱·성폭력 인정시만 해당)
보 고	기한일	지체없이 서면통보	7일 이내	사안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유초중	교육지원청, 성인식개선팀, 여성가족부	교육지원청, 성인식개선팀	교육지원청, 성인식개선팀 여성가족부
	고특수	도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여성가족부	도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성인식개선팀, 여성가족부
서식		1-11, 1-12	3-11, 3-12	4-5, 4-6

※보고 부서: 사안 발생 시 해당 주관부서와 총괄부서로 보고,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학생(피해자)-교사(가해자)의 경우 보고 필수

나. 사안처리 [관련부서]

성비위 관련자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총괄부서 (보고필수)
		본청		교육지원청		
기해자	피해자	주관부서	협조부서	주관부서	협조부서	
교원	교원	교원인사과 (초중등인사팀)	-	교육국(과)	-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
	지방공무원		총무과 노사협력과		행정국(과)	
	교육공무직원	교원인사과 (인사팀)	-	교원인사과 노사협력과	행정국(과)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총무과 (인사팀)	-	행정국(과)	-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
	교원		교원인사과 노사협력과		교육국(과)	
	교육공무직원		-		-	
교육공무직원	교육공무직원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인사팀)	-	행정국(과)	-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
	교원		교원인사과 총무과		교육국(과)	
	지방공무원		-		-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재무과	-	행정국(과)	-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
	교원		교원인사과		교육국(과)	
	-		-		-	

위 피고 매뉴얼 9쪽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대응 주제별 단계에 따른 역할 및 유의사항

가. 기관장

인지

-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 **학생 사안의 경우 사안 보고 받은 즉시 수사기관 신고와 교육청 보고**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유급 휴가, 근무장소 변경, 부서 전환, 행위자의 부서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
- 신고인(학생,교사 등)을 격려하고 보호, 필요한 지원
- 피해자 사건 정보 유출 우려 행위자 면담하지 않기-조사 시 공식절차로 진행

위 피고 매뉴얼 11쪽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담당자(고충상담원)

상담

- 편안한 분위기의 별도 공간에서 상담 진행
-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격려
-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 제공
-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한 후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
- 피해자가 조사 과정 외에 제3자에게 설명할 때 유의하여 안내 (행위자로부터 명예훼손죄 등 고소 가능성 있음)
- 구체적인 상담에 앞서 기관 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피해자가 절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가능)
- 사건에 대한 세세한 것보다는 피해자가 말하고 싶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청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는 것에 집중
- 사안 접수 후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사가 진행됨을 명확히 안내
-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기관에 바라는 보호조치 의견을 확인 후 기관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
- **피해자가 말한 사실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함께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가 진행됨을 안내(학생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서 신고)**
- 신원과 상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 긴급 보호조치 시 2차 가해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사안 통보 시간이 필요함을 안내(신청인이 가피해자 분리 방법 선택)
- 비밀유지 및 한계(결재 진행과정 중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설명

아래내용은, 피고의 부존재 주장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근거입니다. 위 피고 매뉴얼 56쪽 문서 관리 부분입니다.

나. 종결 및 후속조치 절차

[문서 관리]

- 문서 취합하여 보관
 - 당사자들의 정보 공개 및 열람 요청이나 사법 처리 절차 가운데 기록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 기준에 맞게 관리 및 취급
 - 분실과 유출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면 안 됨
- 문서 보관 및 관리
 -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스캔하여 PDF 형태로 저장해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신상정보 관리
 - 업무관리 시스템 보고 시: 대국민 공개 여부에 ‘비공개’, 1호, 4호, 5호, 6호 등으로 공개 개한. 직원 열람 제한 ‘영구’
 - 상담일지와 같이 인쇄된 형태로 보관되는 관련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별도 보관
 -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외장하드에 담아 비밀번호 설정하여 보관
 - 자료 열람 시에는 열람대장에 열람자, 일자, 목적 등을 기록
 - 성고충 사안 처리 기록물의 보관 기한은 5년임

다. 소결

위와 같은 내용을 살피시어 피고의 ‘부존재’ 주장(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률조항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하는 바 “그 밖의 관계행정청”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피고가 해석하는 “그 밖의 관계행정청” 개념은 타당합니다. 즉 피고는 “당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처분 등에 관계되는 어떠한 처분권한을 가지는 행정청, 취소된 처분을 기초로 그와 관련되는 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총칭”한다고 합니다. 즉 ’관계행정청’이란, 해당 사건의 피고 행정청과 동일한 행정주체에 속하는 행정청이나 동일한 사무계통에 속하는 상하관계에 있는 행정청에 한하지 않고,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 또는 전제로 하여 이와 관련된 처분 또는 이에 부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청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기속력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장래의 행동을 제약하는 실체법상의 의무를 과하는 힘이므로 기판력과는 이질적인 특수한 효력을 말합니다(특수효력설 : 통설, 판례). 행정청이 이 사건 피고처럼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무용한 법리다툼을 하면서 국민 일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하고, 주관적 범위가 넓은 효력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 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법원의 확정판결의 취지를 몰각하는 부적법·편법 공무집행임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VII. 입증책임 관련 :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입증책임 등 법리

1. 비공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과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의 심사 기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

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의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다. 한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규정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도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로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될 경우의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2.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사안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부존재’ 자료들은 비공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만약 위 ‘부존재’라는 거부처분 사유를 ‘비공개사유 해당’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경우 해당 비공개사유에 대하여 위 법리 및 판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 정보 공개법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위 처분내용은 ‘부존재’ 이므로 본 소송 내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피고가 할 수도 없습니다.

VII.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갑 제7호증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2020)
1. 갑 제8호증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2023)
1. 갑 제9호증 충청북도교육청용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

2023. 8. 2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귀중